

토 지 등 양 도 차 익 명 세 서

대상법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(전화번호 :)	

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	---------	---------

자산양도 및 자산취득(예정)내역					
구분	⑥ 자산명	⑦ 소재지	⑧ 면적	⑨ 양도가액	⑩ 취득(예정)가액
양도자산					
취득 (예정)자산					

익금불산입 금액						
⑪ 양도가액	⑫ 장부가액	⑬ 이월결손금	⑭ 이전비용	⑮ 취득가액 등	⑯ 비율 (⑭+⑮)/⑪	⑰ 익금불산입금액 (⑪-⑫-⑬)×⑯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

☐제56조제7항

☐제57조제11항

☐제58조제4항

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해당 과세이연 관련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출서류 각 1부 1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56조제7항 관련 제출서류 가.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: 이전완료보고서 나.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및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: 이전계획서 2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57조제11항 관련 제출서류 가.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: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나.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: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3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58조제4항 관련 제출서류 가. 혁신도시로 수도권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: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나.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혁신도시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: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작성 방법

1.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.
2. ⑨란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58조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역내를 말합니다) 본사 또는 대도시내 공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.
3. ⑩란은 지방이전 후 취득(예정)자산의 취득(예정)가액을 적습니다.
4. ⑪란은 ⑨란의 양도가액 금액을 적습니다.
5. ⑫란에는 양도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습니다.
6. ⑬란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.
7. ⑭란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58조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역내를 말합니다) 본사 또는 대도시내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을 적습니다.
8. ⑮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56조제3항제3호 또는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적습니다.
9. ⑯란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58조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역내를 말합니다) 본사 또는 대도시내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이전비용 및 취득가액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을 한도로 적습니다.